

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자원회수시설 관련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6 - 8
----------	--------

제출년월일 : 2016. 1. .
제 출 자 :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

1. 개정이유

마포자원회수시설 관련기금의 존속기한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마포자원회수시설 관련기금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현행 조례의 기금존속기한 연장 및 부칙에 나와 있는 존속기한을 조례안에 명시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마포자원회수시설 관련기금의 존속기한 연장 및 명시(안 제2조의2)
-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1년 2월 1일까지로 명시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 제142조,
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- 라. 규제여부 : 신설·강화되는 규제 없음

4. 기타사항

- 가. 입법예고 : 2015. 11. 26 ~ 2015. 12. 16(제출된 의견 없음)
- 나. 가정복지과의 자치법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: 해당사항 없음
- 다. 감사담당관의 자치법규 부패영향자율평가 결과 : 원안 동의
- 라.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: 적정
- 마.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·규칙 심의회 심의·의결(2016.1.14)
- 바.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자원화수시설 관련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
- 사. 신·구조문 대조표 1부.

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자원회수시설 관련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자원회수시설 관련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조의2(기금의 존속기한)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1년 2월 1일까지로 한다.

다만,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, 제2조의2 개정규정은 2016년 2월 2일부터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p><u>제2조의2(기금의 존속기한)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1년 2월 1일</u> <u>까지로 한다. 다만, 존속기한이</u> <u>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</u> <u>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</u> <u>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</u> <u>연장할 수 있다.</u></p>

**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자원회수시설 관련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
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**

1.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

- 기금의 존속기한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기금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12조제2항제1호에 해당

- 1.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,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

3. 미첨부 사유

- 조례 개정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 없음

4. 작성자

작성자 이름	복지교육국 청소행정과 이명아
연 락 처	02-3153-9233